

**2026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교 육 부 소 관

2026. 4.

교 육 위 원 회

>>>

목 차

I. 소관부처 회부 추가경정예산안	1
II. 심사경과	1
II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2
<붙임> 참조	
IV. 대체토론의 요지	2
V. 소위원회 심사보고	2
VI. 찬반토론의 요지	3
VII. 심사결과	3
VIII. 소수의견의 요지	4
IX. 부대의견	4
※ 붙임 : 교육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조정내역	5
I. 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총괄표	5
II. 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6
III. 부대의견	14
<붙임>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17

2026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6. 4.
교육위원회

I. 소관부처 회부 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부 소관

- 일반회계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6년 3월 31일
2. 회부일자 : 2026년 3월 31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3회 국회(임시회)

- 제3차 교육위원회(2026.4.1.)

- 상정(교육부 소관)
-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4회 국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6.4.3.)

- 상정(교육부 소관), 심사

○ 제1차 교육위원회(2026.4.6.)

- 상정(교육부 소관), 수정의결

Ⅲ.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붙임 참조 / 수석전문위원 : 최선영, 전문위원 : 윤상열)

Ⅳ.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 조정훈 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총 225억 9,500만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397억 5,300만원, 영유아특별회계에서 284억 1,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07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음.

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으로,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청년층의 고용절벽 대응을 위하여 20개 사업단 추가를 위해 140억원을 증액하였고,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을 19~39세 저소득층 청년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28억 3,500만원을 증액하였음.

또한, 국립대 의과대학에 해부학 실습실 등 필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설계비 164억 원을 증액하였고,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은 거점학교 7개교 추가선발을 위해 7억원을 증액하였음.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필수불가결한 경비에 우선 집행되도록 하는 등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음.

VI.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VII. 심사결과

1. 교육부 소관 : 수정의결

Ⅷ.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Ⅸ. 부대의견

(붙임 참조)

※ 붙임 : 교육위원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조정내역

Ⅰ. 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총괄표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 변동액 없음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회 계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교육위원회	교육부	일반회계	22,595	-	22,595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39,753	-	39,753
		영유아특별회계	28,413	-	28,413
	합 계		90,761	-	90,761

II. 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가. 교육부

1.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 변동액 없음

2.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6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1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4131-304)	28,557	-	28,557	31,392	2,835	○ 내역사업인 ‘청년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금’ (신규)은 19~39세 저소득층 청년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인원 대다수가 40~50대 중장년층인 점을 고려하여, 19~39세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및 대학원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추가 지원을 통해 지속 성장 및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35만원, 총 9,000명에 대한 지원금 28억 3,500만원 증액 - 35만원 × 9,000명 × 90% (소진율) = 28억 3,500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6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2	해외 한국어 보급 (4331-301)	21,283	-	21,283	28,283	7,000	○ 내역사업인 ‘해외 한국어반 보조교사 파견’ (신규)은 해외 현지 한국어반에 한국인 청년을 배치하여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학습을 돕고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 청년들의 해외 한국어 교육 관련 분야 경험과 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청년 파견 및 사업 관리 비용 70억원 증액 · 지원대상: 34세 이하 취약계층 청년 300명 · 지원예산: 70억원 - 청년파견비(항공료, 보수, 주거비 등) 53억 7,000만원 * 청년 1인당 250만원 또는 200만원을 6개월간 지원 - 사업관리비 16억 3,000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6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3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4606-304)	2,750	300	3,050	3,750	700	○ 이 사업은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진로상담, 취업프로그램 정보제공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현재 권역별 거점학교는 30개(추경예산 포함)로, 전국 직업계고 총 570여 개 대비 부족한 상황이므로 졸업생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반계고 졸업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직업계고 거점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점학교 선발 확대(7개교 추가선발)에 필요한 7억원 증액	
4	지방교육 행정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신규)	-	-	-	12,060	12,060	○ 이 사업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으로 통합특별교육청 출범이 예정된 상황에서 차질없는 행정통합 및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따른 주요 정보시스템 통합, 시설·환경 재정비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120억 6,000만원 증액 - 에듀파인 및 NEIS 등 주요 정보시스템 통합 60억원 -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환경 재정비 등 60억 6,000만원	

(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6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1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2256-300)	262,461	28,300	290,761	304,761	14,000	○ 내역사업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신규, 추경안 283억원)는 청년층 고용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비재학생을 대상으로 단기 집중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임. ○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사업으로 운영 중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총 88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이번 추경을 통해 반영된 동 사업은 비재학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40개 사업단만 운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20개 사업단을 추가하기 위한 140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6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2	국립대학 기본경비 (총액 비대상) (2703-250)	146,208	-	146,208	154,881	8,673	○ 이 사업은 국립대학의 조직 및 인력 운영과 관련된 필수적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중동 상황으로 고유가 등 대내외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데, 그동안 연례적으로 부족하여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 온 ‘공공요금및제세’ 항목을 대비책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10% 86억 7,300만원 증액 - 86,734(’ 26년 공공요금및제세 예산) × 10%	
3	국립대학 시설확충 (2740-300)	910,898	12,000	922,898	939,298	16,400	○ 내역사업인 ‘의대여건개선’ (신규)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정상화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 ○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실 등 필수 시설 구축을 위해 설계비 예산 164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6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4	서울 대학교 출연지원 (2742-300)	700,716	-	700,716	701,056	340	○ 내역사업인 ‘특별회계사업비’ (본예산 300억 1,500만원)는 서울대학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연구장비 인프라 구축, 오염물질 배출 저감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임. ○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서울대학교 태양광 설비 확충 예산 3억 4,000만원 증액	
5	인천 대학교 출연지원 (2742-302)	140,021	-	140,021	140,361	340	○ 내역사업인 ‘특별회계사업비’ (본예산 104억 6,600만원)는 인천대학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장비 및 기자재 확충, 시설 보수 등을 수행하는 것임. ○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인천대학교 태양광 설비 확충 예산 3억 4,000만원 증액	

(3) 영유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6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1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640-404)	2,182,864	-	2,182,864	2,211,277	3,928	○ 내역사업인 ‘어린이집 운영지원’ (본예산 296억 1,800만원)은 장애아 전문 및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집단급식소 신고 일부 어린이집 한정)에 대한 급식위생관리지원금, 교재교구비(연 100만원) 등을 지원하는 것임. ○ 중동전쟁에 따른 유류비 급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차량운영비 지원단가의 인상(월 20만원→월 30만원)이 필요한바, 39억 2,800만원 증액 $6,200\text{대} \times 10\text{만원} \times 12\text{개월} \times 52.8\% = 3,928\text{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6년도			수정안 (D)	수정액 (D-C)	수정 이유	비고
		본예산 (A)	증감액 (B)	추경안 (C=A+B)				
						19,854	○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급식위생관리지원금 대상 확대(인건비 미지원 모든 어린이집)가 필요한바, 198억 5,400만원 증액 $10,445\text{개원}^* \times 30\text{만원} \times 12\text{개월} \times 52.8\% = 19,854\text{백만원}$ ※ 인건비 미지원 시설 16,234개원(* 25. 11. 기준 17,279개원에서 어린이집 감소 비율을 반영하여 산출)에서 기존 5,789개원 제외	
						4,631	○ 장애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교육·보육 제공을 위하여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 장애인용 교구 구입비에 대한 추가 지원(연 345만원)이 필요한바, ‘취약영유아 어린이집 지원’ 내내역 사업 신설을 위한 46억 3,100만원 증액 $345\text{만원}^* \times [(4\text{개 학급} \times \text{장애아전문 } 178\text{개원}) + \text{장애아통합 } 1,830\text{개원}] \times 52.8\% = 4,631\text{백만원}$ * 유치원 특수학급 평균 운영비 345만원 ** 12명 이상 보육, 교사 대 아동 비율 1:3 적용	

Ⅲ. 부대의견

가. 교육부

- 교육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고유가에 따른 공공요금, 학교운영비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에 우선 집행되도록 하는 한편, 향후 재정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일부 안정화기금 적립도 고려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경 취지에 맞게 고유가에 따른 공공요금, 학교운영비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에 집행되도록 하고 홍보성, 연수성 경비 등에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논의, 시·도교육감들과 소통,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급한 현안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설치 연한이 오래된 태양광 설비로 화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태양광 설비 안전 및 노후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 교육부는 태양광 설비가 효율적으로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태양광 설비 확충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교육부는 미취업·진로미결정 직업계고 학생에게 이력관리, 진로상담, 직업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는 거점학교 선발을 위하여 노력한다.
- 교육부는 이란상황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대학부설연구소의 AI 연구 인프라 및 전력 공급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개선 및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재정 배분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 교육부는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사업의 인프라 고도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예산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
-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근거를 구체화한다.
- 교육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성과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고	등	·	평 생 교 육 지 원 특 별 회 계

202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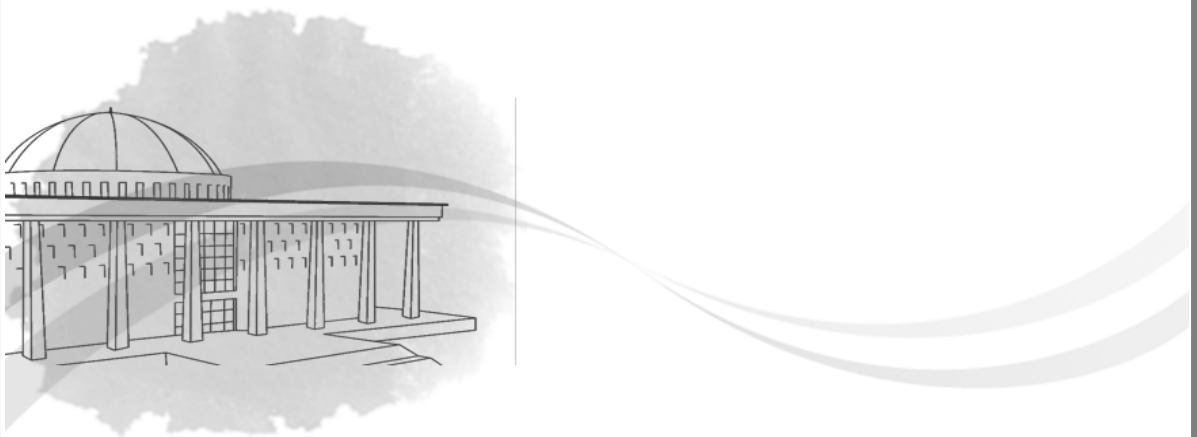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선 영
전 문 위 원 윤 상 열

목 차

I .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및 개요	1
2.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
가. 총괄 현황	2
나. 세부사업별 현황	3
(1) 증액사업	3
II . 검토의견	5
1. 대학지원관	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국립대학 시설확충	9
: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 소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과성 파악 필요	11
2. 학교정책관	17
【일반회계】	
1)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19
: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사업 관리 필요	21
3. 학교지원관	27
【일반회계】	
1)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29
: 지역별 거점학교를 균형있게 선발하도록 보완방안 마련 필요	30
4. 교원교육자치지원관	37
【일반회계】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집행·운용 필요	43
5. 인공지능인재지원국	5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53
: ①고용노동부 소관 유사사업과의 차별화 노력 필요 등	55
②취업률 지표의 신뢰성 확보 등 사업 성과관리 개선 필요	60
6. 영유아정책국	63
【일반회계】	
1) 영유아특별회계 전출	65
: 영유아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방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 필요	67
2)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	70

Ⅱ.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및 개요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은 민생과 피해 기업·산업의 어려움 경감을 위해 26조 2천 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소요 재원은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2조원, 기금 자체재원 1.0조 활용을 통해 조달함.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수입·지출규모 >

(단위: 조원)

	'25년		'26년		B-A
	본예산	2회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 총수입 (증가율, 전년비)	651.6 (6.4)	642.4 (4.9)	675.2 (3.6)	700.6 (7.5)	25.4
◇ 총지출 (증가율, 전년비)	673.3 (2.5)	703.3 (7.1)	727.9 (8.1)	753.1 (11.8)	25.2
◇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21.7 (△0.8)	△60.8 (△2.3)	△52.7 (△1.9)	△52.5 (△1.9)	0.2
◇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73.9 (△2.8)	△111.6 (△4.2)	△107.8 (△3.9)	△107.6 (△3.8)	0.2
◇ 국가채무 (GDP대비, %)	1,273.3 (48.1)	1,301.9 (49.1)	1,413.8 (51.6)	1,412.8 (50.6)	△1

※ 기획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작성

2.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총괄 현황

□ 교육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4조 8,109억 원(4.5%)이 증액 편성되었음.

증액사업은 내국세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9개 사업 4조 8,109억 원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조 7,706억 원(6.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403억 원(0.2%) 증액 편성되었음.

< 교육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 >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		2026년		
	본예산	추경 증액분	본예산 (A)	1회추경 증액분(C)	(C/A+B)
총지출(A+B)	1,048,684	1,028,468	1,063,607	48,109	4.5
▪예산지출(A)	980,896	958,458	993,898	48,109	4.8
일반회계	787,985	769,115	734,709	47,706	6.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256	3,256	2,333	-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1,020	31,020	-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8,635	155,067	163,909	403	0.2
영유아지원특별회계	-	-	92,948	-	-
▪기금지출(B)	67,788	70,010	69,709	-	-
사학진흥기금	3,778	3,796	2,586	-	-
사학연금기금	64,010	66,214	67,123	-	-

※ 총지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 - 보전지출

※ 2025년 추경 증액분은 2회 추경 기준(기금변경 포함)

나. 세부사업별 현황

(1) 증액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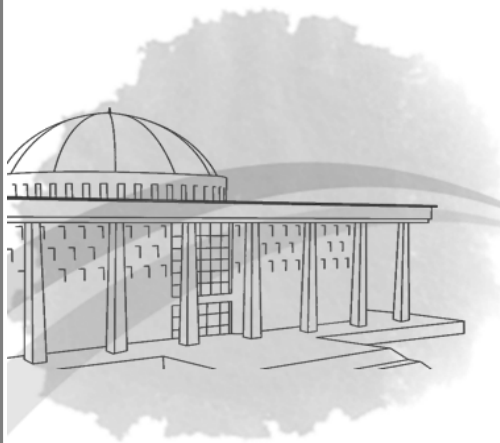
-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지원 등 9개 세부사업에 4조 8,109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 증액사업은 세부사업별로 내국세 연동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등 5개사업)”에 4조 7,693억 원을,
- 고유가 대응 태양광 설비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에 120억 원,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 청년뉴딜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에 283억 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에 3억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음.

< 2026년 제1회 추경안 관련 증액 사업내역 >

(단위: 억원)

연 번	사업명	'26년 본예산	1회추경 증액분	주요내용 등
	합 계	729,062	41,809	
1	보통교부금	690,049	45,772	내국세 및 교육세 연동에 따라 '26년 본예산 대비 6.6%증액 ※ 내국세 20.79%×96.2% +교육세 일부
2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6,309	455	내국세 연동에 따라 '26년 본예산 대비 7.2%증액 ※ 내국세 20.79%×3.8%×(90/380)
3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2,103	152	내국세 연동에 따라 '26년 본예산 대비 7.2%증액 ※ 내국세 20.79%×3.8%×(30/380)
4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2,618	910	내국세 연동에 따라 '26년 본예산 대비 7.2%증액 ※ 내국세 20.79%×3.8%×(180/380)
5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	5,608	405	내국세 연동에 따라 '26년 본예산 대비 7.2%증액 ※ 내국세 20.79%×3.8%×(80/380)
6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613	10	국립학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 3교 × 333백만원
7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2,625	283	청년층 고용절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비재학생) 대상 단기 집중교육 제공 ※ 40교 × 700백만원
8	국립대학 시설확충	9,109	120	국립대학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 35교 × 340백만원
9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28	3	미취업·미진로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 지원을 위한 거점학교의 단계적 확대 ※ 추가 거점학교 선정 : 3개교 × 100백만원

II. 검토 의견



1. 대학지원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국립대학 시설확충(2740-300)¹⁾

- 교육부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이 35개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증가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는 태양광 설비 설치비 이외에 운영비, 유지보수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추경안 개요

- 국립대학 시설확충(2740-300) 사업은 국립대학교의 부족한 시설 신·증축,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하여 교수·학습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9,108억 9,800만원 대비 120억 원 (1.3%)이 증액된 9,228억 9,800만이 편성되었음.

1) 문의: 02-6788-5189

< 2026년도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 제1회 추경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증 감	
	본예산	본예산(A)	추경안(B)	(B-A)	%
□ 국립대학 시설확충	1,092,909	910,898	922,898	12,000	1.3
○ 확충사업	354,200	182,916	182,916	0	0.0
○ 보수사업	379,650	480,782	480,782	0	0.0
○ 정책사업	93,493	83,358	95,358	12,000	14.4
○ BTL정부지급금	122,366	163,842	163,842	0	0.0
○ 의대여건개선	143,200	0	0	0	0.0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 소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과성 파악 필요

- 국립대학 시설확충 세부사업은 확충사업, 보수사업, 정책사업, BTL 정부지급금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책사업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관리를 위한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사업,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한 수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드라이비트 제거·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샌드위치패널 제거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추정안에는 정책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에 1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은 국립대학의 건물옥상,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동 사업의 예산 편성 추이 및 계획을 살펴보면, 2018~2026년 예산은 2017년 기준 에너지자립률 3.1%를 기점으로 하여 2027년까지 에너지자립률 5% 달성을 목표로, 2018년 30억원, 2019년 60억원, 2020년 90억원 등 각각 30억원씩 증액 편성되었고,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는 90억 원이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2026년 추경안은 2025년 기준 에너지자립률 7.1%를 기점으로 2030년까지 에너지자립률 10% 달성을 목표로 하여, 2026년 본예산 90억 원 대비 30억 원 증액된 12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으며,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20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됨.

<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예산(안) 및 추경안 >

구분	2018~2026년 예산	2026년 추경안~2029년 예산안
현황	• 2017년 기준 에너지자립률 3.1%	• 2025년 기준 에너지자립률 7.1%
목표	• 2027년까지 에너지자립률 5% 달성	• 2030년까지 에너지자립률 10% 달성 ※ 추경안 반영시 2029년까지 달성 가능
예산	• (2018년) 30억원 • (2019년) 60억원 • (2020~2026년) 각 90억원	• 각 120억원

주: 에너지자립률(%) = 태양광에너지 발전량(kWh) / 연간 전력사용량(kWh) × 100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 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교육부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은 장기간(2018~2026년) 동일한 사업 목표치(에너지자립률 5%)가 유지되었으나, 2026년 추경안에서 목표치가 5% 상향 조정되고 목표치 달성 기한이 1년 앞당겨지는 등 체계적인 사업계획에 따르기보다 변동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 교육부는 2026년 추경안 편성과 관련하여, 2025년 11월에 실시한 국립대학 태양광 발전 관련 조사 결과, 국립대학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최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에너지자립률이 16%로 파악되어, 에너지자립률 목표치를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였고, 이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1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한편, 인공지능 활용 확대와 국제적 상황에 따른 에너지 비용 증가 등 대학의 비용부담 경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목표치 달성 시기를 1년 앞당긴 2029년까지로 변경하고 계획한 연간 예산액을 추경안에 반영하였다고 설명함.

-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학교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대전환 정책²⁾을 발표한 바 있고, 학업 여건과 국제 상황 변화 등에 따른 국립대학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조기에 경감하기 위하여 관련 지원을 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2)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에너지대전환의 성과 원년, 탄소중립 선도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 2026.2.1.

□ 그러나 동 사업은 35개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증가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특히 동 사업의 목표치로 사용되는 에너지자립률은 태양광 에너지 발전량이 연간 전력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간 전력사용량이 변동되는 경우 이에 연동하여 변동되는데,

2026년 추경안부터 2029년까지 예산안의 에너지자립률은 모두 ‘2025년 전력사용량(805,716,934kW)’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2026년 이후 실제 연간 전력사용량과 이에 연동되는 에너지자립률은 예측치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연도별 계획(안) >

구분	2025	2026		2027(안)	2028(안)	2029(안)
		본예산	추경안			
에너지자립률(%)	7.1	7.6	8.2	8.8	9.4	10.0
예산(억원)		90	120	120	120	120
설치용량(kW)		2,700	3,600	3,600	3,600	3,614
추가 발전량(kWh)		3,702,311	4,935,573	4,935,573	4,935,573	4,954,767
발전량(kWh)	57,597,851	61,300,162	66,235,735	71,171,308	76,106,881	81,061,648

주: 1. 에너지자립률(%) = 태양광에너지 발전량(kWh) / 연간 전력사용량(kWh) × 100
(* 전력사용량은 2025년 805,716,934kW기준)

2. 설치용량(kW) = 예산액(안) / 3,330천원/kw(설비단가)

3. 발전량(kWh) = 설치용량 × (24h×15.97%(설비이용률)) × 98%(인버터효율) × 365일

자료: 교육부

□ 둘째, 태양광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에 120억 원의 추경안이 반영될 경우 7.1억 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되고 2,267톤의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할 때 투입 비용(120억 원) 대비 산출 효과(7.1억 원)는 약 5.9% 수준이나, 태양광을 통해 에너지를 다양화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이 지속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효과(안) >

구분	예산액(안) (억원)	설치용량 (kW)	태양광 발전량 (kWh)	전기요금 절감액 (억원)	온실가스 감축량 (톤)
2025	-	-	57,597,851	823.6	26,460
2026	90	2,700	3,702,311	5.3	1,700
2026 추경안	120	3,600	4,935,573	7.1	2,267

주: 1. 전기요금 절감액(백만원): 태양광 발전량×0.143천원/kWh(교육용 전기 기준 단가)

2. 온실가스 감축량(톤): 태양광 발전량×0.4594tCO₂eq/MWh/1000

자료: 교육부

□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의 효과 파악에서 투입되는 비용은 예산이 편성된 태양광 설비 설치비만 포함되고, 대학 자체 예산으로 집행되는 태양광 설비 설치 이후 운영비, 유지보수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폐기 비용 등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데,

태양광 설비의 설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산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2. 학교정책관

<일반회계>

1)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1702-300)³⁾

- 교육부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 추진 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사업 관리를 해야 할 것임.

가) 사업 및 추경안 개요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1702-300) 사업은 국립대학 부설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시설비, 비품비 또는 교육과정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613억 2,900만원 대비 9억 9,900만원(1.6%)이 증액된 623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

3) 문의: 02-6788-5186

< 2026년도 제1회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증 감	
	본예산	본예산(A)	추경안(B)	(B-A)	%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57,435	61,329	62,328	999	1.6
○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26,819	30,764	31,763	999	3.1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사업 관리 필요

-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은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학교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부족한 시설확충,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교육환경 여건 개선, 교육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교실 확충 등으로 교수·학습 및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2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으로 국립학교 3개교(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 제주대학교 부설고, 한국교원대학교 부설초)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위하여 본 예산 307억 6,400만원 대비 9억 9,900만원(3.1%)이 증액된 317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제1회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증 감	
	본예산	본예산(A)	추경안(B)	(B-A)	%
□ 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57,435	61,329	62,328	999	1.6
○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26,819	30,764	31,763	999	3.1

자료 : 교육부

- 추가편성한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개교 당 3억 3,3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산출내역으로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계비로 2,133만원, 공사비로 3억 1,166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규모 및 산출내역 >

□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26) 30,764백만원 → ('26추경) 31,763백만원		
- (요구) 국립학교 3교 태양광 발전 설비(햇빛이음학교 사업) 설치 사업비 요구		
- (산출) 333백만원 × 3교 = 999백만원		
□ 추경안 산출내역		
구분	2026년도 본예산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예산	24,705백만원	25,704백만원
산출 내역	○ 실시설계비(420-02) : 896백만원 8)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896백만원) · 21.3백만원 × 42교(국립부설 36교 및 특수학교 6교)	○ 실시설계비(420-02) : 960백만원 8)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960백만원) · 21.3백만원 × 42교(국립부설 36교 및 특수학교 6교) · 태양광 발전 설비 설계비 : 21,33백만원×3교 =64백만원
	○ 공사비(420-03) : 23,809백만원 8)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23,809백만원) · 566.9백만원 × 42교(국립부설 36교 및 특수학교 6교)	○ 공사비(420-02) : 24,744천원 8)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24,744백만원) · 566.9백만원 × 42교(국립부설 36교 및 특수학교 6교) ·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비 : 311.66백만원×3교 =935백만원

자료: 교육부

- 동 사업은 국립학교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및 초중고 학생 대상 기후·생태계 전환 교육 실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고 기후·생태전환교육과 연계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국립학교에 태양광 설비

를 설치할 예정임.

- 에너지 수입의존도(‘24년 94%)가 높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안정 및 가격 변동성이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⁴⁾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및 학생들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사용·생산을 직접 경험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실천 공간으로서 학교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추진되었음⁵⁾.
-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올해 3월부터 2030년 12월 까지 5년간 추진될 계획으로, 국공립 초등학교 4,378개교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는 것으로 목표로 400개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후 나머지 3,978개교로 확대할 예정임.
- 또한, 사업내용으로 태양광 설비 활용 교육모델 개발 보급 및 컨설팅 지원도 포함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학교급별 교육모델 개발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고,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학교 및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추후 확대사업 세부물량 확정에 따라 교사 역량강화 연수,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선도학교 지정·운영 등 확대사업을 실시할 예정임.⁶⁾

4)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8년 배출량 대비 '30년까지 40% 감축

5)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교육부 제공)

6)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교육부 제공)

- 현재 국립학교 42개교 중 31개교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미설치 11개교 중 2개교(제주대학교 부설교, 한국교원대학교 부설초)와 추가 설치 1개교(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를 지원할 예정임.

<국립부설학교 태양광 설치 현황>

학교명	설치현황	비고
합계(42교)	설치(31교)	
서울교대(부설초)	설치	
부산교대(부설초)	설치	
경인교대(부설초)	설치	
춘천교대(부설초)	설치	
청주교대(부설초)	설치	
공주교대(부설초)	설치	
전주교대(전주부설초)	설치	
전주교대(군산부설초)	설치	추경예산 요청
광주교대(광주부설초)	설치	
광주교대(목포부설초)	설치	
대구교대(대구부설초)	설치	
대구교대(안동부설초)	미설치	
진주교대(부설초)	미설치	
전북대(부설고)	설치	
전남대(부설중)	설치	
전남대(부설고)	설치	
경북대(부설초)	설치	
경북대(부설중)	미설치	
경북대(부설고)	설치	
부산대(부설고)	설치	
강원대(부설고)	설치	
충북대(부설중)	설치	
충북대(부설고)	설치	
제주대(부설초)	설치	

제주대(부설중)	설치	
제주대(부설고)	미설치	추경예산 요청
한국교원대(부설유치원)	설치	
한국교원대(부설초)	미설치	추경예산 요청
한국교원대(부설중)	미설치	
한국교원대(부설고)	미설치	
공주대(부설유치원)	설치	
공주대(부설중)	미설치	
공주대(부설고)	설치	
공주대(부설특수)	설치	
강릉원주대(부설유치원)	설치	
한국우진학교	설치	
한국경진학교	설치	
서울맹학교	설치	
서울농학교	미설치	
한국선진학교	설치	
경상국립대(부설중)	미설치	
경상국립대(부설고)	미설치	

자료 : 교육부

□ 교육부는 올해 안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가 가능한 학교를 조사한 후 해당 학교를 선정하였고, 향후 나머지 미설치 9개교를 비롯하여 태양광 설비가 노후화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⁷⁾.

□ 그러나, 동 사업은 “햇빛이음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햇빛이음학교”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종합계획은 11월에 수립될 것으로 보이고⁸⁾, 동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7) 교육부는 이와 더불어 학교별 태양광 50kW 설치 시 연간 약 68MWh/교의 전력생산을 통해 전기요금 10,000천원/교 상당 절감될 것으로 보고, 학교별 태양광 50kW 설치 시 연간 31.49톤/교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학교 태양광 설비의 교육적 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인식에 대한 제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시행되는 것으로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편성된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교육부는 올해 사업으로 선정된 3개교에 대한 사업비 집행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학교지원관

<일반회계>

1)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4606-304)⁹⁾

- 교육부는 거점학교 선발 절차에 있어 부산, 울산, 제주, 세종에 거점학교가 부재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균형 있는 거점학교 선발을 위하여 평가방식을 개선하는 등 보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추경안 개요

-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4606-304) 사업은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진로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이력관리, 진로상담, 직업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 본예산 대비 3억 원(10.9%)이 증액된 3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도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추경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증 감	
	본예산	본예산(A)	추경안(B)	(B-A)	%
□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2,450	2,750	3,050	300	10.9
○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2,450	2,750	3,050	300	10.9

자료 : 교육부

9) 문의: 02-6788-5193

나) 검토의견: 지역별 거점학교를 균형있게 선발하도록 보완방안 마련 필요

-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은 권역별 거점학교를 선발하여, 이를 통해 미취업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졸업 후까지 지속적으로 취업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은 한국장학재단 내 중앙취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보조사업으로, 선정된 거점학교당 1억 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원금 액수는 2025년 성과평가(기존 지정된 24개교) 및 2026년 신규 선발(추가 3개교) 결과에 따라 거점학교별로 차등 지급됨.

- 동 사업의 2026년도 본예산은 2025년 예산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총 27억 5,000만원으로,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거점학교 27개교에 교당 약 1억 200만원이 편성된 것임.

현재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사업의 거점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총 24개교(2025년 예산 기준)로, 2026년 3개교를 추가 선발하여 총 27개교에 대한 보조금이 편성되었음.

<2025년 거점학교 선정 현황>

학교명			시·도	대표계열	학교유형
중부권 (9)	1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경기	공업	특성화고(사립)
	2	서울동구고등학교	서울	상업	특성화고(사립)
	3	세그루패션디자인고등학교	서울	가사실업	특성화고(사립)
	4	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서울	상업	특성화고(사립)
	5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서울	상업	특성화고(사립)
	6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인천	공업	특성화고(사립)
	7	홍천농업고등학교	강원	농업	특성화고(공립)
	8	근명고등학교	경기	상업	특성화고(사립)
	9	인천금융고등학교	인천	상업	특성화고(사립)
충청권 (6)	10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대전	공업	마이스터고(사립)
	11	충주상업고등학교	충북	상업	특성화고(사립)
	12	청주공업고등학교	충북	공업	특성화고(공립)
	13	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대전	상업	특성화고(사립)
	14	아산스마트팩토리마이스터고등학교	충남	공업	마이스터고(공립)
	15	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충남	공업	마이스터고(공립)
경상권 (4)	16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대구	공업	마이스터고(공립)
	17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경북	공업	마이스터고(국립)
	18	경주정보고등학교	경북	상업	특성화고(사립)
	19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경남	공업	특성화고(공립)
전라권 (5)	20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광주	상업	특성화고(사립)
	21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전북	공업	마이스터고(국립)
	22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전남	공업	마이스터고(공립)
	23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광주	공업	특성화고(사립)
	24	전주공업고등학교	전북	공업	특성화고(공립)

□ 2026년도 추경안은 2026년 본예산에서 3억 원이 증액된 총 30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7개의 거점학교를 기준으로 산출된

2026년 본예산에서 3개교를 추가선발하여 총 30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3억 원이 증액된 것임.

<2026년 예산 및 추경안 세부 산출내역>

'26년 예산		'26년 추경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50	○ 민간경상보조(320-01) : 2,750,000천원 - 거점학교 27개교 × 102백만원	3,050	○ 민간경상보조(320-01) : 3,050,000천원 - 거점학교 27개교 × 102백만원 - 추가 거점학교 3개교 선정 × 100백만원 * 500백만원은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지급

자료: 교육부

□ 교육부는 직업계고 졸업생 중 약 20%정도¹⁰⁾가 진로미결정자이며, 조기에 이들에 대한 취업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쉬었음 청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취업 지원을 위해 거점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현재 거점학교 수는 27개교로 전국 직업계고 583개교 대비 약 5%에 해당하는데 학생들의 접근성 등의 한계로 인하여 거점학교 수를 시·도교육청당 3개교씩 총 51개교까지 확대를 추진중이므로, 추경을 통한 추가 거점학교 선발이 필요하다는 설명임.

10)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수 59,661명 중 12,420명이 미취업·진로미결정자임.

□ 현재 거점학교 선발 절차는 총 3단계(요건심사, 서면평가, 발표평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요건심사와 서면평가를 통과한 학교는 발표평가를 받게 되며, 발표 평가 점수를 기초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거점학교 선정을 의결하게 됨.

이때, 거점학교 선발은 평가점수를 고득점한 순으로 선정되게 되나, 거점학교가 부재하거나 부족한 시·도 소재 학교 등에 대한 우선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는 거점학교 선발을 도모하고 있음.

< 거점학교 선발 절차 >

구 분		세부내용
1단계	요건 심사	신청서(제출서류 포함)의 형식요건(구비 서류 등) 충족 여부 확인(재단)
2단계	서면 평가	① 신청 학교의 제안서를 위원에게 심의 요청(재단→평가위원) ② 서면 평가점수를 부여(평가위원) ③ 재단은 평가위원 서면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신규 및 대체 선발 예정 학교 수의 3배수 이내 선정
3단계	발표 평가	① 서면 평가를 통해 1차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진행 ② 발표평가를 통해 평가위원별 서면 평가점수를 조정하여 최종 점수 부여(평가위원) ③ 발표 평가점수를 기초로, 최종 거점학교 선정 의결(선정위원회)

자료: 한국장학재단

□ 거점학교는 졸업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체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부에서 시·도교

육청 당 3개의 거점학교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만큼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로 균형 있게 거점학교를 선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현재 거점학교가 선발된 현황을 살펴보면, 이미 거점학교가 선발된 시·도간 거점학교 선발 수에도 일부 차이가 있고, 총 4개 시·도(부산, 울산, 제주, 세종)에서 거점학교가 부재한 상황으로,

거점학교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직업계고 졸업생 중 미취업자인 학생들은 동 사업을 통한 취업 지원 및 취업 프로그램 참여 등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권역·지역별 거점학교 선발 현황>

중부권 9개교		충청권 6개교	
서울 4개교	경기 2개교	대전 2개교	충북 2개교
인천 2개교	강원 1개교	충남 2개교	
경상권 4개교		전라권 5개교	
대구 1개교	경북 2개교	광주 2개교	전남 1개교
경남 1개교		전북 2개교	
거점학교가 미설치된 시·도			
부산	울산	제주	세종

자료: 한국장학재단

□ 동 사업의 취지가 권역별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직업계고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접근 가능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25년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거점학교가 선발되지 않은 지역인 부산, 울산, 세종, 제주 지역의 미취업률이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시도별(학교 소재) 직업계고 졸업자 전체 졸업 후 상황 >

(단위: 개교, 명, %)

구분	학교수	졸업자 (A)	취업자 현황		진학자 현황		입대자	제외 인정자	미취업자 (B)	미취업률 (B/A)
			취업자	취업률	진학자	진학자				
서울	72	8,809	2,062	50.4	4,419		170	127	2,031	23.1
부산	36	4,729	1,146	55.3	2,567		54	37	925	19.6
대구	20	3,387	970	67.8	1,825		116	16	460	13.6
인천	29	3,480	955	55.7	1,606		56	103	760	21.8
광주	13	1,804	403	53.5	969		39	43	350	19.4
대전	12	1,631	476	60.7	751		80	16	308	18.9
울산	11	1,540	483	60.3	661		48	30	318	20.6
세종	3	190	55	59.8	95		0	3	37	19.5
경기	108	12,480	2,730	50.3	6,576		182	299	2,693	21.6
강원	31	1,744	475	54.6	804		57	13	395	22.6
충북	26	2,905	723	55.4	1,512		35	54	581	20.0
충남	38	3,139	953	58.2	1,337		87	78	684	21.8
전북	32	2,250	540	51.6	1,023		117	64	506	22.5
전남	46	3,319	727	53.4	1,809		105	43	635	19.1
경북	54	3,906	1,498	63.9	1,235		273	55	845	21.6
경남	35	3,139	895	55.9	1,409		81	48	706	22.5
제주	9	1,209	205	52.4	775		23	20	186	15.4
총 계	575	59,661	15,296	55.2	29,373		1,523	1,049	12,420	20.8

자료: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교육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에 거점학교가 부재하여 해당 지역의 학생들은 동일한 취업지원 수요가 존재함에도 정책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거점학교는 졸업생 지원 인프라 구축, 취업 연계 기업 발굴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근 지역 학생들까지 포괄하여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역 간 균형 있는 거점학교 배치가 중요함에도 특정 권역에서는 거점학교가 부재하여 해당 지역 학생들의 접근성 한계로 충분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에 한계가 있음.

- 현재 최종 거점학교 선정 과정에서 거점학교가 부재하거나 부족한 시·도 소재 학교 등을 우선 선정 가능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거점학교가 부재한 지역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교육부는 단순히 우선 선발 가능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신규 거점학교 선발에 있어 지역별로 거점학교가 균형 있게 선발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일반회계>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¹¹⁾

-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 확정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심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적기에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것으로(제1조), 그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¹²⁾로 구성됨(제3조)¹³⁾.

11) 문의: 02-6788-5185

12) 교육세입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및 영유아특별회계 전출분 제외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

□ 교부금은 각 시도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한 재정수요에 용도를 정하여 교부하는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며(제3조 제1항), 이 중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 유형(국가시책, 지역현안수요, 재난안전관리)으로 세분하여 유형별로 각각 60%, 30%, 10%의 비율로 배분되나(제5조의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제5조의3 신설, '23. 12. 31.)을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은 내국세분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여, 상향비율(0.8%)에 해당하는 재원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사업에 한정하여 사용됨¹⁴⁾.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2023.12.31. 개정, 2024.1.1. 시행)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류별 교부 기준 >

종류와 재원		교부 기준	
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97% + 교육세 일부*)		시·도교육청별로 총액을 교부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에 사용하거나 학교회계로 전출하여 집행	
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3%)	국가시책 (60%)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 관련 국가 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할 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 • 매년 1월 31일까지 교부하되, 필요 시 교부시기 조정 가능
	지역현안 (30%)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 현안수요가 발생할 때	• 교육감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여 교부(수시)
	재난안전관리 (10%)	재해의 발생 또는 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한시적 교부 기준>

종류		교부기준	한시적(2024~2026)
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u>97%</u> + 교육세 일부*	내국세의 20.79% 중 <u>96.2%</u> + 교육세 일부*
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79% 중 <u>3%</u>	내국세의 20.79% 중 <u>3.8%</u>
	국가시책	3%의 60%	3%의 60% (180/380 ÷ 47.4%)
	지역현안수요	3%의 30%	3%의 30% (90/380 ÷ 23.7%)
	재난안전관리	3%의 10%	3%의 10% (30/380 ÷ 7.9%)
	디지털교육혁신	<신설>	<u>0.8%의 100% (80/380 ÷ 21.0%)</u>

*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및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금 제외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938호(2023. 12. 31.)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나)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개요

- 교부금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내국세 및 교육세 세입 경정으로 인한 증액분(내국세 증액분 5,056,325백만원 + 교육세 감액분 △286,987백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71조 6,687억 4,800만원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조 7,693억 3,800만원(보통교부금 4조 5,771억 9,800만원, 특별교부금 1,921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6조 4,380억 8,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7%가 증액된 규모임.

<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		'26년		증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제1회 추경안(B)	(B-A)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2,279,438	70,281,203	71,668,748	76,438,086	4,769,338	6.7
□ 보통교부금	69,659,572	67,732,259	69,004,889	73,582,087	4,577,198	6.6
□ 특별교부금	2,619,866	2,548,944	2,663,859	2,855,999	192,140	7.2
○ 국가시책	1,067,409	1,033,814	1,261,828	1,352,842	91,014	7.2
○ 지역현안	743,713	726,916	630,914	676,421	45,507	7.2
○ 재난안전	247,905	242,306	210,304	225,473	15,169	7.2
○ 디지털교육혁신	560,839	545,908	560,813	601,263	40,450	7.2

자료: 교육부

다) 검토의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율적 집행·운용 필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제2항)¹⁵⁾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6년도 상반기 세수 증가에 따른 세입경정으로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 편성된 것임.
- 교부금은 내국세 및 교육세와 연동하여 그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당초 세수 추계에 따른 예산액과 실제 수납된 징수액 간 오차로 인한 변동성이 발생할 밖에 없는 구조로, 세수 추계 오차에 따른 교부금 규모의 조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¹⁶⁾이 이루어짐.
- 최근 10년간 교부금 추이 및 변경(정산)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경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년도 증(+) 정산분 반영, 불용 등에 따라 연도 중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6)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 예산액(추계액) 대비 징수액이 많을 경우 초과분을 다음연도 중 세입잉여금 정산분으로 반영하고, 예산(추계액) 대비 징수액이 적을 경우 부족분을 다음다음 연도 교부금 본예산 편성시에 감정산하여 반영하고 있음.

본예산 대비 변경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3년 연속(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수결손 발생에 따라 연도 중 추가경정 또는 불용으로 교부금 규모가 당초 교부금 산정액 대비 감액 되었고, 2026년도 본예산의 경우에는 전전년도 감(-) 정산분이 반영되어 전년 본예산 대비 6,106억 9,000만원(△0.9%) 감액 편성되었음.

< 최근 10년간 교부금 추이 및 변경(정산) 규모 >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본예산(A)	추가교부(변경) (B)			합계 (A+B) (예산현 액)	본예산 대비 변경액 (B/A)
		당해연도 추가경정 (순증감)	전년도 정산금	불용		
2016	41,228,353	1,933,149	-	-	43,161,502	4.7%
2017	42,931,736	1,786,761	1,872,494	-	46,590,991	8.5%
2018	49,540,693	-	2,912,093	-	52,452,786	5.9%
2019	55,248,823	-	5,281,687	-	60,530,510	9.6%
2020	55,372,241	△1,861,069	31,897	-	53,543,069	△3.3%
2021	53,230,001	6,365,795	741,258	-	60,337,054	13.4%
2022	65,059,537	10,985,419	5,252,633	-	81,297,589	25.0%
2023	75,760,666	-	-	△10,397,000	65,363,666	△13.7%
2024	68,873,209	-	36,439	△4,252,436	64,657,212	△6.1%
2025	72,279,438	△1,998,235	-	-	70,281,203	△2.8%
2026(안)	71,668,748	4,769,338	-	-	76,438,086	6.7%

자료 : 교육부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보유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¹⁷⁾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¹⁸⁾)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등 교부금 감액에 대응하여 왔음.

<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감소에 따른 대응 >

(단위 : 억원)

회계 연도	세입감소		시·도교육청 대응						
	보통 교부금 감액	기타 (지자체 전출금 등)	기금 활용		기금 전출 금	지출 구조조정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시설 비	인건 비	예비비 등	기타
2023	△104,141	△1,965	19,449	6,736	△50,613	△14,341	△5,000	△3,000	△6,743
2024	△44,567	5,707	6,843	888	△8,107	△10,679	△4,152	△3,342	△4,850
2025	△19,273	441	-	-	△3,067	△8,159	△3,907	△1,165	△2,534

※ 2023~2024년은 기재부 재추계 발표 이후 시·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서 증감액 기준

※ 2025년은 세입경정으로 인한 감추경 이후 시·도교육청 대응 최종 자료

자료: 교육부

- 교육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은 그동안 교부금 규모 축소 및 물가·인건비 상승에 따라 본예산에 일부 미편성되었던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 개선비에 활용할 예정이며, 교부금 추경 취지를 고려하여 민생 회복·사교육비 경감·위기학생 안전망 구축·

17)「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자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8)「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태양광 설비 구축 등 국민 체감형 교육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참고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2026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을
통지(2026.2.24.)하였고 이번 추경안 증액분은 확정교부율에 따라 아
래와 같이 교부할 예정임.

< 2026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및 수정 교부 내역 >

(단위 : 천원)

시도	'26년 본예산액 (확정교부액)	비율	'26년 추경예산 (수정교부액)	본예산액 대비 추경 증액분
서울	5,858,263,355	8.49%	6,246,850,768	388,587,413
부산	3,786,166,778	5.49%	4,037,308,911	251,142,133
대구	3,083,976,561	4.47%	3,288,541,361	204,564,800
인천	3,895,831,415	5.65%	4,154,247,768	258,416,353
광주	2,144,811,444	3.11%	2,287,080,011	142,268,567
대전	2,207,938,857	3.20%	2,354,394,760	146,455,903
울산	1,735,321,353	2.51%	1,850,427,826	115,106,473
세종	917,594,921	1.33%	978,460,371	60,865,450
경기	17,166,888,837	24.88%	18,305,594,375	1,138,705,538
강원	2,989,206,120	4.33%	3,187,484,655	198,278,535
충북	2,753,293,605	3.99%	2,935,923,708	182,630,103
충남	3,853,269,597	5.58%	4,108,862,761	255,593,164
전북	3,612,209,361	5.23%	3,851,812,637	239,603,276
전남	3,842,513,042	5.57%	4,097,392,707	254,879,665
경북	4,584,854,438	6.64%	4,888,974,724	304,120,286
경남	5,489,372,559	7.96%	5,853,490,891	364,118,332
제주	1,083,376,757	1.57%	1,155,238,766	71,862,009
계	69,004,889,000	100.0%	73,582,087,000	4,577,198,000

자료 : 교육부

□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정지출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으로 교부금 규모가 감소되는 경우 지방 교육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교부금을 추가로 교부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운용상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교부금은 정부 예산안 확정 이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¹⁹⁾의 심의를 거쳐 확정교부액이 시·도교육청에 교부통지되며, 이후 시·도교육청은 확정교부액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시·도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는바 실제 교부금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임.

따라서 교육부는 추가경정예산 확정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심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적기에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음.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9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율의 보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5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8조에 따른 교부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부금의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또한, 시·도교육청은 세입경정에 따른 교부금의 증감에 대응하여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교부금 증가로 여유재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²⁰⁾으로 적정 수준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해 보임.

참고로, 최근 3년(2023년부터 2025년까지) 동안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액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시·도교육청은 주요 가용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였는바, 2022년 연도말 보유액 대비 2026년 본예산 기준 보유액은 크게 감소한 상황임.

< 시·도교육청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유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11,584,481	9,599,438	6,162,242	3,749,295	1,762,898
서울	465,100	665,663	357,440	357,440	104,185
부산	918,889	763,813	653,724	431,234	229,564
대구	490,337	474,526	289,220	198,558	204,716
인천	825,649	616,179	285,154	35,907	7,477
광주	446,059	459,856	224,755	128,274	27,976
대전	548,248	492,375	276,142	122,566	63,798
울산	153,395	160,110	53,481	37,001	11,952
세종	447,626	433,035	273,085	191,966	61,994

2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경기	1,758,388	1,170,166	1,106,452	370,584	117,369
강원	1,030,662	1,186,758	904,299	610,983	289,489
충북	842,901	867,412	526,829	356,662	194,667
충남	998,726	533,877	204,746	81,736	9,890
전북	790,163	566,512	264,827	224,312	164,408
전남	422,800	141,491	146,116	45,983	16,583
경북	337,118	347,679	287,816	297,415	97,890
경남	1,063,420	679,523	298,317	256,495	159,806
제주	45,000	40,463	9,839	2,179	1,134

※ 연도말 보유액 기준, 2026년도는 본예산 기준

자료 : 교육부

5. 인공지능인재지원국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2256-300)²¹⁾

- 교육부는 비재학생의 취업 촉진을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지원 사업과 유사 사업 추진에 따른 부처 간 역할 중복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차별화된 운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년 구직자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집행상 재량이 커 사후 통제가 쉽지 않은 출연금으로 수행됨에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예산집행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우려되므로, 세부적인 운영계획과 예산집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추경안 개요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2256-300) 사업은 산업 수요를 반영한 대학 산학연협력 선도모델 고도화, 공유·협업 산학연협력 생태계 조성 지원, 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을 통해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임.
-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2,624억 6,100만원에서 283억원(10.8%)이 증액된 2,907억 6,100만원임.

21) 문의: 02-6788-5188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제1회 추경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증 감	
	본예산	본예산(A)	추경안(B)	(B-A)	%
□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182,700	262,461	290,761	28,300	10.8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	-	28,300	28,300	-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66,000	134,175	134,175	-	-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116,700	120,900	120,900	-	-
○ 첨단분야 인턴십 지원	-	4,130	4,130	-	-
○ 첨단분야 글로벌 교육과정 운영	-	756	756	-	-
○ 반도체공동연구소 연합교육과정	-	1,900	1,900	-	-
○ 산학연협력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	600	600	-	-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① 고용노동부 소관 유사사업과의 차별화 노력 필요 등

-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산학협력력 고도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비재학생 청년 및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하여 청년의 취업 및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은 청년(비재학생)을 대상²²⁾으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 수준별 단기 집중교육을 제공하여 청년 개개인의 역량을 제고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인재형(유형1)과 실전인재형(유형2)로 구분됨.

<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제1회 추경안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28,300	가. (유형1) 첨단인재형 (14,000백만원) • 700백만원×20개교=14,000백만원 나. (유형2) 실전인재형 (14,000백만원) • 700백만원×20개교=14,000백만원 다. 사업관리비(300백만원) • 1식×300백만원=300백만원

자료 : 교육부

22) 참여청년 범위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지 않은 자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 등으로 구분되는 일자리 밖 청년임.

□ 교육부는 첨단인재형(유형1)은 현재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운영 중인 대학(66개교) 중 20개교를 선정하고, 실전인재형(유형2)은 인문·사회·예술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기업과 함께 청년층의 실전 직무 역량 함양을 지원할 20개교를 선정하여,

두가지 유형에 대해 총 4,000명 내외의 청년(비재학생)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지원유형별 사업의 개요 >

	(유형1) 첨단인재형	(유형2) 실전인재형
지원대상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 66개교(88개 사업단*) * 인공지능 40개, 반도체 28개, 이차전지 4개, 바이오 4개, 미래차 4개, 디스플레이 3개, 항공우주 3개, 로봇 2개	대학 및 전문대학
지원규모	20개	20개
지원단가	7억원(기존 부트캠프 사업비에 추가 지원)	7억원(신규 지원)
주요내용	청년(비재학생)에게 첨단산업 부트캠프 교육프로그램 및 경력설계, 사회 활동 등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종합 지원 체계 구축	청년(비재학생)에게 기업과 함께 실습 중심 교육 및 AX 실전 직무 역량 제고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 지원 체계 구축

자료 : 교육부

□ 동 사업은 쉬었음 청년, 취업 준비생, 실업자 등 일자리 밖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²³⁾에서 청년층 민생안정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비재학

23) 2025년 청년 실업률은 6.1%로 전년(5.9%)대비 0.2%p 상승, 쉬었음 청년은 42.5만명으로 3년 연속 증가('23년 : 38.3만명, '24년 : 41.4만명)

생인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청년 구직자(비재학생) 대상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은 이미 고용노동부가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책 영역으로,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음.

일례로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2026년 예산 : 5,413억원)’은 KT·삼성 등 선도기업, 민간 혁신훈련기관, 서울대·성균관대와 같은 우수 대학 등이 훈련기관으로 참여하여 실무 적합성이 높은 훈련(부트캠프형)²⁴⁾을 바탕으로 즉각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디지털 분야를 넘어 첨단 및 융합 분야를 포괄하는 신기술 분야 전반으로 훈련 분야를 확대·시행 중에 있으며,²⁵⁾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2026년 예산 : 2,848억원)’ 사업도 직무경험이 필요한 미취업 청년에게 민·관협업 기반으로 양질의 일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의 직무 탐색 및 진로 설정, 직무역량 강화와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24) 부트캠프(bootcamp)는 원래 군대에서 신병을 단기간에 집중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의미했는데, 지금은 교육 분야에서 짧은 기간 동안 실무 중심으로 몰입 교육을 하는 과정을 뜻함.

25) 동 사업의 모든 훈련과정은 신기술 분야 선도기업이 직접 또는 훈련기관과 협약을 통해 함께 설계·운영하며, 현장의 실제 과업을 프로젝트로 편성(30% 이상)하여 경험·문제해결 능력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촉진하고 쉬었음 전환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소관 유사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내용	2026예산
K-하이테크 플러스	KT·삼성 등 선도기업, 민간 혁신훈련기관, 서울대·성균관대와 같은 우수 대학 등이 훈련기관으로 참여하여 실무 적합성이 높은 훈련을 바탕으로 즉각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	541,313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 지원	산학 공동 시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지원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전형 고급 인재양성	21,000

자료 : 교육부

그 밖에 고용노동부는 청년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2026년 예산 : 1,065억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2026년 예산 : 1,308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2026년 예산 : 1조 128억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이 청년 구직자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과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지원 사업과 보다 차별화 된 운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부처 간 역할 중복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겠음.

□ 한편, 동 사업은 중동발 고유가 및 고물가 등 대외 경제 충격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1회 추경안이 편성되면서 도입된 사업으로, 청년의 취업 및 사회진출 지원 등 청년층 민생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제1회 추경안에 포함된 동 사업은 신속한 추진의 필요성이 있음.

□ 다만, 현재까지 동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예산집행 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른 준비가 부족하여 추경안이 확정되어 실제 사업이 집행될 경우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우려됨.

특히 해당 사업은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함으로써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출연금은 사용범위가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타 비목에 비하여 집행상의 재량이 커 일단 기관으로 이전되고 난 뒤에는 사후 통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현재 이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예산집행 계획이 부재한 상황임.

□ 이에 교육부는 향후 사업 집행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예산집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업 대상·추진 방식 및 세부 비용 등을 명확히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

② 취업률 지표의 신뢰성 확보 등 사업 성과관리 개선 필요

-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재학생을 첨단분야의 전문실무인력으로 양성하여 이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는 취업률이 될 것임.

그런데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해당 사업에서 활용되는 취업률은 대학별 자체 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조사 기준과 방법이 상이하고 공신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국회 등 대외적으로 해당 통계를 공표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²⁶⁾

그러나 취업률과 같은 핵심 성과지표가 신뢰성 있게 산정되지 못하는 경우, 사업의 성과가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 확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성과 측정이 미흡한 상태에서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비효율을 적시에 파악하고 개선하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유사·중복 사업의 반복 추진이나 비효율적인 재정 투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이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는 재정 운용의 책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6) 교육부는 동 사업의 취업률에 대해 신뢰성 없는 통계를 공표할 경우 혼선을 낳을 수 있으며, 이에 현재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조사와의 연계를 협의중이라는 의견임.

- 이에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도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을 비재학생 청년으로 확대한 사업이므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문제점은 새로 도입되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음.
- 따라서 동 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취업률 산정 기준과 조사 방법을 표준화하고 공신력 있는 통계와의 연계 등을 통해 성과지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음.

5. 영유아정책국

<일반회계>

1) 영유아특별회계 전출(8001-804)²⁷⁾

-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국고 지원분)은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교육세 지원분과 국고 지원분에 의존하고 있는 영유아특별회계의 구조적 특성 및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연이은 교육세 세수결손 등을 고려하면 교육세 부족분 충당을 위한 연례적인 추가경정예산이 우려되는바, 영유아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영유아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과도한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 추계 오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추경안 개요

- 영유아특별회계 전출(8001-804) 사업은 「영유아특별회계법」²⁸⁾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영유아 교육·보육 사업을 위하여 교육세의 일부²⁹⁾에서 전출하는 금액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영유아특별회계에 전입하는 사업임.

27) 문의: 02-6788-5187

28)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29)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

-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6조 6,290억 7,200만원에서 4,304억 8,000만원(6.5%)이 증액된 7조 595억 5,200만원임.

< 영유아특별회계 전출 제1회 추경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증 감	
	본예산	본예산(A)	추경안(B)	(B-A)	%
□ 영유아특별회계 전출	-	6,629,072	7,059,552	430,480	6.5

자료 : 교육부

나) 검토의견: 영유아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방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 필요

- 동 사업은 영유아 관련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특별회계법」에 따라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금(교육세 지원분)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영유아특별회계에 전입하는 사업임.
- 이번 추경안에서는 4,30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교육부에 따르면, 세수추계 오차³⁰⁾로 교육세입이 예산 대비 수납실적이 적게 나타나는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와 연동하여 그 규모가 결정되는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금(교육세 지원분)이 감액되었고, 그 부족분을 충당하여 기존 영유아 교육·보육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다는 설명임.

30) < 세수추계 오차 현황 >

(단위: 조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교육세	본예산(최초편성)	5.3	5.3	4.7	6.2	6.0
	실제수납액(결산액)	5.1	4.6	5.2	5.4	5.8*
	차이	△0.2 (△3.8%)	△0.7 (△13.2%)	0.4 (9.6%)	△0.8 (△12.8%)	△0.2 (△3.3%)

* 2025년은 실제수납액(결산액)이 아닌 기획재정부 2025년 세수 재추계(9.25.) 결과 예상세입액
(자료 : 교육부)

** 2026년도 현황의 경우 교육부에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제공받지 못함.

<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규모 및 산출내역 >

① 영유아특별회계 전출

- : ('26) 6,629,072백만원 → ('26추경) 7,059,552백만원, 430,480백만원 증액
- (요구) 「영유아특별회계」 대상 세부사업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 금액 증액 필요
 - (산출) 특별회계 전출 : 특별회계 전출 : 6,629,072백만원 × 1식 (2026년 본예산)
→ 7,059,552백만원 × 1식 (2026년 추경안)

○ 2026년도 및 2026년도 추경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6년 추경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629,072	○ 특별회계 전출금(610-02) : 6,629,072백만원 가. 특별회계 전출 : 6,629,072백만원 × 1식	7,059,552	○ 특별회계 전출금(610-02) : 7,059,552백만원 가. 특별회계 전출 : 7,059,552백만원 × 1식

자료: 교육부

□ 영유아특별회계가 세입예산 대부분을 국고 지원³¹⁾에 의존하고 있어 교육세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영유아 교육·보육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금(교육세 지원분) 감액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증액하는 것은 기존 영유아 교육·보육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영유아특별회계의 구조적 특성 및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연이은 교육세 세수결손 등을 고려하면 교육세 부족분 충당을 위한 연례적인 추가경정예산이 우려되는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은 교육세

31) '2026년도 예산안 기준, 세입예산 중 국고 지원이 약 99.7%를 차지함.

* 교육세 지원분 2조 6,380억 4,400만원(28.38%), 국고 지원분 6조 6,290억 7,200만원(71.32%)

세수 감소에 따른 영유아특별회계의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

- 따라서, 국세수입의 장기적 추이와 영유아특별회계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운용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등 영유아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로 인한 세수결손은 경제상황 변동성으로 불가피한 것일 수 있으나 과도한 세수결손이 발생되어 영유아특별회계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수 추계 오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 영유아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구조에 대해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의 비중이 과다한 경우 재정구조 상 일반회계와의 차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자체세원 부족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³²⁾이 있었음.

32)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비심사검토보고서 p. 347

2)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8001-805)³³⁾

가) 사업 및 추경안 개요

-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8001-805) 사업은 「영유아특별회계법」³⁴⁾에 근거하여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교육세의 60%를 일반회계로부터 영유아특별회계에 전입하는 사업임.
- 2026년도 제1회 추경안은 본예산 2조 6,380억 4,400만원에서 4,304억 8,000만원(16.3%)이 감액된 2조 2,075억 6,400만원임.

<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 제1회 추경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증 감	
	본예산	본예산(A)	추경안(B)	(B-A)	%
□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	-	2,638,044	2,207,564	△430,480	△16.3

자료 : 교육부

- 교육부에 따르면, 세수추계 오차로 교육세입이 예산 대비 수납실적이 적

33) 문의: 02-6788-5187

34)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게 나타나는 세수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세수결손 분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다는 설명임.

- 영유아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은 교육세와 연동하여 그 규모가 결정됨에 따라 당초 세수 추계에 따른 예산액과 실제 수납된 징수액 간 오차로 인한 변동성이 발생할 밖에 없는 구조임.

<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규모 및 산출내역 >

① 영유아특별회계 전출			
: ('26) 2,638,044백만원 → ('26추경) 2,207,564백만원, 430,480백만원 감액			
- (요구) 「영유아특별회계」 대상 세부사업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특별회계 감액 요청			
- (산출) 특별회계 전출 : 특별회계 전출 : 2,638,044백만원 × 1식 (2026년 본예산)			
→ 2,207,564백만원 × 1식 (2026년 추경안)			
○ 2026년도 및 2026년도 추경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6년 추경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638,044	○ 특별회계 전출금(610-02) : 2,638,044백만원 가. 특별회계 전출 : 2,638,044백만원 × 1식	2,207,564	○ 특별회계 전출금(610-02) : 2,207,564백만원 가. 특별회계 전출 : 2,207,564백만원 × 1식

자료: 교육부